

한·중 FTA 무역상 기술장벽 (TBT) 협정 비교 및 정책 시사점

- 유새별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sbyoo@kiep.go.kr, Tel: 044-414-108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_ 044-414-1114 FAX_ 044-414-1144

<http://www.kiep.go.kr>

차 례 ●●●

1. 문제 제기
2. 한·중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
3. 한·중 FTA와 기체결 FTA의 TBT 협정 비교 분석
4. 향후 전망 및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 ▶ 한·중 FTA는 우리나라 제의 교역대상국인 중국과 체결된 FTA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외에도 무역상 기술장벽(이하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같이 양국간 비관세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무역을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 한·중 FTA TBT 협정문은 제품 수출 시 과도한 기술적 규제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의 관심사항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문은 양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보다 발전된 용어 사용 및 신규 조항 채택 등 당초 예상보다 진일보한 협정으로 분석됨.
 - TBT 협정의 주요 조항인 ‘국제표준’, ‘투명성’, ‘적합성 평가절차’ 및 ‘공동협력’ 부문은 기체결 협정문과 비슷한 수준이나, 협정문 중 많은 부분에서 구속력을 지닌 ‘shall’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기체결 TBT 협정문에 비해 TBT 협정 이행에 대한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양국은 동 TBT 협정을 계기로 일부 산업(품목)에 대해 상호인정협정(이하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향후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아울러 기존 FTA TBT 협정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소비자제품안전 등에 대한 신규조항이 추가된 것도 특징임.
- ▶ 반면 한·중 FTA TBT 협정 내용 중 국제표준, 투명성 부분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에 비해 다소 미흡함.
 - 양국 영역 내 표준화기관간 협력부분에는 우리보다 제한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중국 측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음.
 - 투명성 조항에서는 자국 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과정의 결과만을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중국 입장이 반영됨.
- ▶ 한·중 FTA는 빠르면 2015년 내 발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중 수출기업의 한·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TBT 차원에서 △ 품목별·지역별 TBT 데이터베이스 구축 △ 품목별 기업 설문조사를 통한 차별규제 리스트 확보 △ 양자 TBT 위원회 적극 활용을 통한 양국간 규제협력 도모 등 정부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TBT 정책이 필요

1. 문제 제기

■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절차나 무역상 기술장벽(이하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같은 비관세장벽은 자국의 산업 보호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상호 의존도가 높은 한·중 양국의 무역에서 TBT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수입관세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대중 수출에서 관세부담은 줄어든 반면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와 같은 TBT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한·중 양국 무역에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양국의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 및 투자 기업들이 중국 비관세 장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TBT는 한·중 FTA 협상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루어져왔음.

■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은 TBT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 4차 협상에 가서야 비로소 논의가 개시되었고, 7차 협상에서 TBT 모델리티에 합의한 후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됨(표 1 참고).

- 협상 초기 중국 측은 TBT를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와 병행하여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투명성, TBT 위원회 등의 의제들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조항(10개) 구성에 합의하며 2단계 협상이 계속되었음.

■ 8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한·EU,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13개 조 50개 항)으로 TBT 협정문안을 만들어 제시하였고, 이후 양국은 이를 기초로 기술적 및 법률적 검토 작업을 거쳐 15개 조로 구성된 포괄적인 TBT 협정문에 합의·타결하였음.

표 1. 한·중 FTA TBT 협상 추진 경위

회의	주요 내용
1차 협상('12.5, 베이징)	• 협상 개시선언, ToR(협상운영세칙) 합의
2차 협상('12.7, 제주도)	• 중국제도에 대한 질의서(8개) 및 모델리티 전달
3차 협상('12.8, 웨이하이)	• TBT, SPS 논의 무산
4차 협상('12.10, 경주)	• 양국의 제도소개 및 Q&A
5차 협상('13.4, 하얼빈)	• 중국은 TBT 의견서(7개조), 4개 질문서 제시(중국은 WTO/TBT 수준 협정문을 희망)
6차 협상('13.7, 부산)	• 중국 답변서(5개) 제시 • 모델리티(수정안, TBT 11개 조, 6개 현안) 제시
7차 협상('13.9, 웨이팡)	• 모델리티 합의(10개조, TBT 현안 논의 계속)
8차 협상('13.11, 송도)	• 협정문 초안 상호설명 및 질의응답
9차 협상('14.1, 시안)	• 중국 측의 기본 입장: WTO TBT 플러스 조항 수용 불가

표 1. 계속

회의	주요 내용
10차 협상('14.3, 일산)	• 우리 측에서 준비한 통합협정문(안)을 채택하고 목적, 범위, 표준 등 일부 조항에 합의
11차 협상('14.5, 메이산)	• 중국은 수용 불가 조항들의 사유를 설명하며 삭제 요청 • 우리는 상대국 시험인증기관 진출 협력, 소비자제품안전 등 수정안 제시
12차 협상('14.7, 대구)	• 양측은 입장차이가 크지 않은 조항들 위주로 상당 부분 합의문안 도출
13차 협상('14.9, 베이징)	• 양측은 이행협약 관련 문안을 제외한 대부분 조항에 대해 패키지딜을 전제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
교체수석대표회의('14.11, 베이징)	• 15개 조의 TBT 협정문 타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2014. 11), 「한·중 FTA TBT협상 결과 및 이행계획」,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 세미나 자료집』.

■ 본고에서는 최근 서명이 끝난 한·중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양국이 기체결한 TBT 협정과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고에서는 한·미 FTA TBT 협정을 포함하여 양국이 공통으로 기체결한 4개국(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페루) TBT 협정과 한·중 FTA TBT 협정 중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 분석함.
- 한·미 FTA는 WTO TBT+(플러스) 협정을 채택했으며, 중·뉴질랜드 FTA는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TBT 협정을 채택하였음.
-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TBT 협정 중 가장 수준 높고 포괄적인 협정문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중 TBT 협정을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한·중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

■ 한·중 FTA TBT 협정문은 목적,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투명성, 협력, 소비자제품안전, 마킹 및 라벨링, 국경조치 등을 포함하는 총 15개 조(article)로 구성되어 있음(표 2 참조).

- 양국은 당사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해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무역비용 감소 등 양국간 무역 촉진과 더불어 동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TBT 협정의 목적을 두고 있음.
- 동 협정의 범위는 양국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preparation), 채택(adoption) 및 적용(application) 과정을 포함하며, WTO TBT 협정에 근거하여 이행됨.

■ 한·중 FTA TBT 협정문은 양국이 각각 기체결한 TBT 협정조항과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 협력을 중점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국제표준이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¹⁾을 활용하도록 함.
- **[기술 규정]** 상대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를지라도 자국 내 기술규정의 목적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기술규정을 자국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장려
 - 그러나 상대국의 기술규정을 미수용할 경우에는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시 미수용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음.
- **[적합성 평가절차]**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을 위해 상대국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 인정 절차에 참여, 채택 및 지정할 수 있으며, 양국 내 기관간 자발적인 상호인정협정(이하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을 통해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음.
 - 양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며, 비용 및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평가기관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촉진

■ 아울러 국내기업의 대중국 수출 시 직면하는 기술장벽을 완화하고 중국에 기진출한 국내시험인증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촉진하고자 △ 표준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 공동 기술협력 △ TBT 협의체 구성·이행 등 양국 공동협력 및 투명성 등의 조항을 상세히 규정함.

- **[공동 협력]** 양국은 서로 다른 규제정책 및 제도에 대해 상호간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기술능력을 배양하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함.
 - 상대국 요청이 있을 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적용에 대한 조언 또는 기술지원 제공
 - 계량(metrology), 표준화(standardization), 시험(testing), 인증(certification), 인정(accreditation)을 담당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 간 협력 장려
 - ※ 국제 표준, 권고 및 지침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적 능력 배양에 목적을 두고 양국간 협력 강화를 의미
 - 양국은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 CB Scheme)²⁾에 따른 시험결과를 상호간 수용하는 등 공동협력을 위한 노력 지속화
 - 자국으로의 상대국 적합성 평가기관 진출, 설립 및 운영 시 협조³⁾하며, 신기술 관련 규제시스템에 대한 정보 상호 제공
- **[투명성]** 양국은 WTO 중앙통지문등록처(Central Registry of Notifications)에 제출한 제안 또는 채택된 기술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상대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행 전 최소 60일의 기간을 부여
 - 제안되거나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유인물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하여 이에 대한 상대국과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장

1) 한·중 FTA TBT 협정 제6.4조에 언급된 국제기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및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AC) 등에 의해 개발된 국제기준을 포함함.

2)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 CB Scheme: 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Components, Equipment and Products, Certification Bodies' Scheme)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제공인인증제도로, 통일된 규정(IEC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된 시험 성적서를 회원국간 상호 수용하는 제도로, 전기전자제품의 시장 출시 이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의미.

3)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한국 측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FITI 시험연구원 등 중국에 기진출한 기관들의 인정획득과 신규진출(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기관들에 대한 협력을 중국에 요청한 바 있음.

- [TBT 협의체 구성 및 이행] 양국간 제기되는 TBT 이슈를 신속히 처리하고 양국간 협정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TBT 위원회⁴⁾ 설치
- TBT 위원회의 기능으로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양국간 정보 교환 △ 상대국 영역 내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상호인정(MRA) 관련 논의 △ TBT 이행에 대해 공동위원회 보고 등을 포함하며, 위원회는 1년에 최소 1회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2. 한·중 FTA TBT 협정문(제6장) 주요 내용

조문		주요 내용
1조	목적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도 제고 - 기술장벽 분야 정보교환을 통한 협력 강화, 교역비용 감소 및 양국간 상호무역 촉진 - 양국간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2조	적용 범위 및 정의	-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 - 지방정부의 TBT 규정 준수 보장을 위해 이용 가능한 합리적 조치 모두 적용
3조	TBT 협정의 확인	WTO TBT 협정상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FTA TBT 협정의 일부로 채택
4조	표준	- WTO TBT 협정문 부속서 3에 관해 합당한 조치를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보장 ('Guarantee'의 의미보다는 '강한 권고(Strongly Recommend)'에 근접한 표현으로 간주) - 양국 영역 내 표준화기관간의 협력 장려 -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연관 표준 활용 - 국제표준 존재 여부 판단을 위해 WTO TBT 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하며 ISO, IEC, ITU, CAC 등에 의한 국제표준을 포함시킴
5조	기술규정	- 상대국의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 - 상대국의 기술규정 동등성 미수용 시 상대국 요청에 따라 사유 설명 의무화
6조	적합성 평가절차	-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상대국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합의, 상대국 적합성 평가 기관 자격 부여의 인정 절차 채택, 상대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인정, 양국간 적합성 평가절차 기관간 자발적 약정 체결 가능, 공급자적합성선언 수용) - 상기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 촉진을 위해 양국 적합성 평가기관간 긴밀한 업무협력 장려 -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대우 보장 - MRA 협상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고려 - 적합성 평가절차 비용 및 시간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해 협력
7조	투명성	- 제안된 표준, 기술규정 등에 대해 상대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 허용 - 상대국의 요청 시, 채택되거나 제안 중인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 채택된 기술규정의 시행시기 연장 요청에 긍정적 검토 - 채택된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즉시 공지

4) TBT 위원회 조정기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중국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으로 지정.

표 2. 계속

조문		주요 내용
8조	협력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의 협력 강화(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개발에 조언 제공, 표준, 시험 및 인증 관련 기관들에 대한 협력, 적합성 평가기관 상호 인정, 국제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정, 시험, 검사 등의 분야 역량 강화, 표준과 적합성평가절차의 개발 및 적용에 관련된 지역·국제기구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력, WTO TBT 위원회 및 관련 국제·지역 포럼에서의 소통 강화; TBT 협정 이행 촉진 등) -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이 자국 내 운영 및 설립 시 협력 - 신기술관련 규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교환 - IECEE CB 시험성적서를 양국 전기제품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결과로 수용 독려
9조	소비자 제품 안전	- 소비자 사용 제품의 안전 확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 - 규제 제도 시스템, 위해제품 조치, 사후관리 정보 등에 대한 정보 교환 - 제품안전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모범규제관행, 위험관리원칙 개발, 이행 및 집행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
10조	이행 협정	적합성평가 협력 분야의 조속한 협상 및 협정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공동 관심분야에 대해 추가 이행협약 체결(합의) 가능
11조	표시 및 라벨링	- 기술규정이 마킹과 라벨링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도록 허용 - 마킹과 라벨링 요구사항이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 - 제품의 마킹과 라벨링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마킹과 라벨링에 대한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마킹과 라벨링의 사전등록 및 허가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 고유한 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비차별적으로 부당한 지연 없이 발행, 특정 언어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않는 한 추가 언어사용 금지 불허,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사용을 허용하도록 노력 등)
12조	국경 조치	시험샘플을 포함한 통관 역류제품에 대해 역류사유를 수입자 또는 대표자에게 즉시 통보
13조	TBT 위원회	- TBT 위원회 설치 합의 - TBT 위원회의 기능(협정 이행, 집행, 점검 및 촉진; TBT 관련 정보교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비정부, 지역, 다자 협의체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 교환; MRA 논의 장려; 공동위원회 보고; 동 협정 이행에 관련된 조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술 협의 등) - 매년 최소 1회 위원회 개최 - TBT위원회 조정기관: [한국]국가기술표준원, [중국]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14조	정보교환	- 타국이 요청하는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 유인물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 - 자국의 필수적 안보에 반하는 정보는 제외
15조	분쟁해결의 미적용	FTA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따르지 않음

자료: 한·중 FTA/TBT 협정문 토대로 저자 정리.

3. 한·중 FTA와 기체결 FTA의 TBT 협정 비교 분석

■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현재 52개국과 총 15건의 FTA를 발효·타결하였고, 이 중 9건⁵⁾의 기체결 FTA 협정문이 TBT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Chapter)으로 분류하고 있음.

- 한국의 기체결 FTA 중 한·미 FTA 및 한·EU FTA는 여타 FTA에 비해 WTO에서 명시하는 TBT 협정 이상의 의무를 포함하는 이른바 ‘WTO+ (WTO 플러스)’ 형식을 취함.
- 대부분의 FTA TBT 협정문은 주로 정의, 적용범위, 일반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규정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미 및 한·EU FTA의 경우 TBT 협정문의 기본적인 조항을 비롯하여 자동차 표준 및 부속서(자동차작업반) 등 다른 FTA와는 차별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까지 22개국과 총 14건의 FTA를 발효·타결하였고, 2006년 발효한 중·칠레 FTA 이후에 체결한 모든 국가와의 FTA에서 TBT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류하고 있음.⁶⁾

- 대부분의 기체결 FTA TBT 협정은 적용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하여 서로 유사한 범위에서 원칙을 규정하는 수준임.
-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개도국/선진국 등 국가별 특성에 맞추어 유연한 TBT 조항을 구성함.

■ 한국과 중국이 현재까지 각기 기체결한 TBT 협정 조항을 살펴보면 △ 목적 및 적용범위 △ 국제표준의 사용 △ 기술규정 동등성 △ 적합성 평가절차의 인정 △ 투명성 확보 △ 공동 협력 △ 조정 위원회(이하 TBT 위원회)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TBT 조항은 각 국가의 기술규제정책, 협정특성 또는 산업별 주요 교역(민감)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양측 모두 WTO TBT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협정문을 구성

■ 중국이 기체결 또는 타결한 14건의 FTA TBT 협정문은 적용범위,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기술협력 및 TBT 위원회 등 핵심 조항을 포함하여 평균 11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한·중 TBT 협정문은 상호 관심사항을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가급적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중국이 기체결한 TBT 조항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한국이 발효한 FTA의 11건 중 한·칠레(제9장), 한·싱가포르(제8장), 한·EU(제4장), 한·페루(제7장), 한·미(제9장), 한·캐(제6장) 6건은 괄호 안 해당 장에 별도의 TBT 조항을 구성하였음. 한국이 체결한 FTA의 4건 중 한·콜롬비아(제6장), 한·중(제6장), 한·뉴질랜드(제6장)도 각각 TBT 챕터의 형태를 취하였음. 그러나 나머지 6건의 기발효·기타결 FTA 경우 TBT 및 SPS가 동일한 장에 두 조항이 하나로 결합되어 구성되거나 다소 간소하게 언급되는 등 TBT 단일 조항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음.

6) 중국의 FTA 기발효 12건 중 중·칠레(제8장), 중·파키스탄(제7장), 중·뉴질랜드(제8장), 중·페루(제7장), 중·코스타리카(제7장), 중·스위스(제6장) 등 6건은 괄호 안 해당 장에 별도의 TBT 조항을 구성하였고, 총 2건의 타결국 중 한·중(제6장) 1건도 TBT 챕터의 형태를 취한 반면, 나머지 7건의 기발효·타결 FTA의 경우 TBT 및 SPS가 동일한 장에 두 조항이 하나로 결합되어 구성되거나 언급되지 않는 등 TBT 단일 조항을 취하지 않음. 단 중·아이슬란드의 경우 제2장 ‘Trade in Goods’ 중 제20조를 이를 다소 간결하게 명시하였음.

- 특히 한·중 간 TBT 협정은 중국의 기체결 협정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소비자제품안전, 마킹 및 라벨링, 국경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술협력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 소비자제품안전: 양국 소비자 사용제품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시스템, 위해제품 조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우수규제관행, 위험관리원칙 이행 등에 대해 양국이 협력할 것에 합의
- ※ 표시 및 라벨링: 표시 및 라벨링의 사전등록·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비차별적으로 부당한 지연 없이 특정 식별번호 발행, 특정언어 사용금지 불허, 비영구적·탈착 가능한 라벨사용 허용 등 제품의 마킹과 라벨링 요구사항을 최소화하여 무역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에 합의
- ※ 국경조치: 시험용 샘플을 포함한 통관 역류제품에 대해 역류 사유를 상대국 수입자 또는 수입대표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

가. 국제표준

■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의 대부분은 WTO TBT 위원회의 결정⁷⁾에 따라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칠레,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의 TBT 협정에서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하며,⁸⁾ 국제표준을 사용함에 있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 사용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함.
- WTO TBT 협정 제5조 4항에 따르면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 ‘부적절(inappropriate)’한 경우만을 국제표준 사용거부 인정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에서만 예외적으로 ‘부적절(inappropriate)’한 경우뿐만 아니라 ‘비효과적(ineffective)’인 경우도 양국의 표준관련 조치에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반면 중국은 페루와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기체결 FTA TBT 조항에서 WTO TBT 협정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표준을 사용하되,⁹⁾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으로 간주될 경우 국제표준을 채택함에 있어 거부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WTO TBT 협정문 제5조에 명시된 ‘부적절’한 경우 이외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국제표준 거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기체결 TBT 협정을 통해 국제표준 거부사유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¹⁰⁾

7) WTO TBT 위원회가 2000. 11. 13.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on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s and Recommendations with relations to Articles 2,5 and Annex 3 of the Agreement)」.

8) 한·EU(제4.5조1항), 한·미(제9.3조), 한·페루(제7.4조2항), 한·호주(제5.3조1항), 한·싱가포르(제8.2조5항) 참고

9) 중·칠레(제63조 1항), 중·파키스탄(제39조 2항), 중·뉴질랜드(제94조 1항), 중·싱가포르(제51조 1항) 참고 단, 중·스위스 FTA는 제6.4조에 따라 ISO, IEC, ITU, CAC 등에 의한 국제기준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한·중 FTA TBT 협정에서 ‘국제표준’ 조항은 대체로 양국이 기체결한 협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WTO TBT 협정을 준수하는 방식을 택함(표 3 참고).

- 양국은 국제표준 활용에 관련하여 최근 체결 또는 타결된 FTA(칠레, 싱가포르 제외)에서는 대체로 WTO TBT 협정에 기인한 방식대로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준수하는 방식을 채택함.
- 한·중 TBT 조항에서는 ISO, IEC, ITU, CAC 등 특정 국제표준화기관에서 개발된 국제표준을 주로 사용하도록 권장함.
- WTO TBT 협정 제4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자국 및 회원국 내 표준기관이 회원으로 등록된, 이른바 지역표준기관이 표준의 준비·채택 및 적용에 대한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보장

표 3. 한국과 중국의 FTA TBT ‘국제표준’ 조항 분석

FTA 기체결국	한국	중국
한·중	- WTO TBT 협정문 부속서 3에 관해 합당한 조치를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보장 - 양국 영역 내 표준화기관의 협력 장려 -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활용(단 국제표준이 ‘비효과적(ineffective)’이거나 ‘부적절(inappropriate)’한 수단일 경우 제외) - 국제표준 존재여부 판단을 위해 WTO TBT 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하며, ISO, IEC, ITU, CAC 등에 의한 국제표준을 포함	
칠레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활용(단, 국제표준이 ‘비효과적(ineffective)’이거나 ‘부적절(inappropriate)’한 수단일 경우 제외)	-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활용(단 국제표준이 ‘비효과적(ineffective)’이거나 ‘부적절(inappropriate)’한 수단일 경우 제외) - WTO TBT 협정문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에 관해 합당한 조치 적용
싱가포르	-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활용(단, 국제표준이 ‘비효과적(ineffective)’이거나 ‘부적절(inappropriate)’한 수단일 경우 제외) - WTO TBT 협정문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에 관해 합당한 조치 적용	-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활용(단 국제표준이 ‘비효과적(ineffective)’이거나 ‘부적절(inappropriate)’한 수단일 경우 제외) - 국제표준화 기구 내에서 개발된 국제표준이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양국 영역 내 기관간 협력 장려
페루	-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사용 - WTO TBT 협정문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에 관해 합당한 조치 적용	-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사용 - WTO TBT 협정문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에 관해 합당한 조치를 적용 - 지역 및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을 통해 양국 영역 내 표준화기관의 협력을 장려

표 3. 계속

FTA 기체결국	한국	중국
뉴질랜드	- WTO TBT 협정문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에 관해 합당한 조치 적용 - 국제표준화기구 내에서 개발된 국제표준이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양국 영역 내 기관간 협력 장려	-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초로서 국제표준 또는 관련 표준 활용(단 국제표준이 '비효과적(ineffective)'이거나 '부적절(inappropriate)'한 수단일 경우 제외) - 국제표준화기구 내에서 개발된 국제표준이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양국 영역 내 기관간 협력 장려
미국	WTO TBT 협정문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에 관해 합당한 조치 적용	-

자료: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나. 투명성

■ 한국이 체결한 칠레, 미국, EU 및 호주와의 TBT 협정에는 당사국 기술규정 제·개정 및 개발과정에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상대국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¹¹⁾ 이외 국가와의 협정에서는 자국의 기술규정 제·개정 결과를 상대국에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페루,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TBT 협정에는 제안된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공공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에 게재하되, 개발과정 참여 대신 전자적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투명성 조항에 있어 양 당사국이 제안되거나 채택한 자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상대국에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제·개정 및 개발 과정에서 상대국 참여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즉 한국의 FTA TBT 협정과 달리 중국의 경우 자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과정에서 상대국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전자적 수단으로 결과만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¹²⁾

■ 한편 제안되거나 채택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대국에 신속히 제공하여 서면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한 사전 허용기간 조항은 양국 모두 기존 FTA TBT 조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함(표 4 참고).

-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 상대국이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11) 한·EU(제4.4조 2항), 한·미(제9.6조 1항), 한·호주(제5.8조 1항) 참고.

12) 중·칠레(제67조 1항), 중·파키스탄(제40조 1항), 중·뉴질랜드(제98조 1항), 중·싱가포르(제54조 2항), 중·페루(99조 1항), 중·코스타리카(제75조 1항) 참고. 단 스위스, 아이슬란드와 협정에는 투명성 조항이 없음.

록 허용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 시 채택된 기술규정의 시행시기 연장 요청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결국 한·중 FTA TBT 협정 내 ‘투명성’ 조항 중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과정에서 상대국 참여 허용에 대한 조항은 중국의 기체결 TBT 협정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나머지 조항은 양국이 기체결한 TBT 협정 조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개 6~7개 조항에 걸쳐 상세하게 규정된 기체결 TBT 협정의 투명성 조항과 달리 한·중 TBT 협정은 4개의 조항으로 압축되어 있음.
- 동 ‘투명성’ 조항은 주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과정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상대국 의견에 신속한 회신 등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항 채택 수준은 여타의 기체결 TBT 협정과 유사함.

표 4. 한국과 중국의 FTA TBT ‘투명성’ 조항 분석

FTA 기체결국	한국	중국
한·중	- 제안된 표준, 기술규정 등에 대해 상대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 허용 - 상대국 요청 시, 채택되거나 제안 중인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 채택된 기술규정의 시행시기 연장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 채택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즉시 공지	
칠레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과정에 비정부인의 참여 보장	- TBT 협정에 따라 통보 관련하여 상대국에 전자적으로 전달(제·개정 과정 참여 불가) - 최소 60일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 허용 - 채택하거나 제안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 - 양국 영역 내 표준화기구는 ISO에 통지되는 국가표준 제·개정 안건을 제공하도록 상호 협력을 촉진
싱가포르	N/A	- TBT 협정에 따라 무역상품에 관해 새로운 기술규정이 도입될 경우 상대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 허용 - 관련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최근 시행된 기술규정에 인용되거나 부합되는 경우 상대국에 전자적 또는 다른 형식으로 전달
페루	- TBT 협정에 따라 통보 관련하여 상대국에 전자적으로 전달 - 최소 60일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 허용 - 채택하거나 제안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 - 시험샘플을 포함한 통관 역류제품에 대해 역류 사유를 수입자 또는 대표자에게 즉시 통보(한·중 TBT 제6,12조 국경조치 조항에 해당)	- TBT 협정에 따라 통보 관련하여 상대국에 전자적으로 전달(제·개정 과정 참여 불가) - 최소 60일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 허용 - 채택하거나 제안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 - 시험샘플을 포함한 통관 역류제품에 대해 역류 사유를 수입자 또는 대표자에게 즉시 통보(한·중 TBT 제6,12조 국경조치 조항에 해당)

표 4. 계속

FTA 기체결국	한국	중국
뉴질랜드	- TBT 협정에 따라 통보 관련하여 상대국 질의처에 전자적으로 전달 - 최소 60일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 허용 - 상품이 이행 약정(제6.12조)의 적용대상이거나 긴급한 문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상대국 질의처에 TBT 관련 조치와 이유 통보 - 상대국의 요청 시, 채택되거나 제안 중인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 TBT 협정에 따라 통보 관련하여 상대국 질의처에 전자적으로 전달(제 개정 과정 참여 불가) - 최소 60일간 상대국 서면 의견 제시 허용 - 기술규정 범위에 대한 적합성 평가절차 필수요건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새롭게 인정·지정된 시험설비 및 인증기관에 대해 최신정보를 빠른 시일 내 상대국과 교환 - 관련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최근 시행된 기술규정에 인용되거나 부합하는 경우 상대국에 전자적 또는 다른 형식으로 전달
미국	- TBT 관련 조치 개발 과정에 상대국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비차별적으로 허용 - TBT 관련 조치에 대한 통보 관련하여 단일의 관보를 통해 공표 - TBT 협정에 따라 통보되는 제안 및 최종본 공고는 단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	-

자료: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다. 적합성 평가절차

■ 한국의 경우 기체결 FTA TBT 조항에서는 상대국 내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메커니즘 존재를 인정하고 △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 △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촉진 △ 적합성 평가기관 채택·지정 및 인정 △ 양자간 적합성 평가기관의 상호인정협정 추진 및 체결에 관한 조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FTA TBT 조항에서는 상대국 영역 내 적합성 평가기관 인가·승인·인정에 대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내국민대우가 보장되도록 규정함.
- 한·페루 FTA의 경우 동 조항에 대해 내국민대우 보장의 준수 의무가 없으나('may'), 한·칠레 FTA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의무적으로('shall')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¹³⁾
- 특히 MRA를 체결함에 있어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의 기체결 FTA TBT 협정에서는 양국간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을 위해 평가기관들의 자발적인 협정 체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양국 동의하에 특정 산업(품목)에 대한 MRA 체결이 상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TBT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13) 한·페루(제7.6조 4항)에는 "Each Party may accredit or otherwise recognize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in the territory of~"로 다소 강제성이 결여된 'may'의 표현을 택한 반면, 한·칠레(제9.6조 4항)에는 "Each Party shall, whatever possible, accept the results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와 같이 보다 강제성을 띄는 'shall'의 표현을 택함.

■ 중국의 기체결 TBT 협정 조항은 한국의 TBT 조항과 유사하나, 적합성 평가절차와 결과 수용 여부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

- 즉 상대국 영역 내에서 실시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수용하기에 앞서 상대국 평가기관의 기술능력(technical competence)과 관련한 사안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¹⁴⁾
- 다만 몇몇 FTA에서는 MRA 또는 관련 협정을 통해 상대국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수행한 평가절차 및 결과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함.
 - 중국이 칠레,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및 뉴질랜드 등과 맺은 FTA TBT 협정에는 상대국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수행한 평가절차 및 결과를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 특히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처음으로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 협정을 부속서 14에 포함시킴.
 - ※ 다만 뉴질랜드는 자체 독자적 적합성 평가기구가 없어, 중·뉴질랜드 MRA는 사실상 뉴질랜드가 중국의 적합성 평가절차를 수용한다는 의미와 다름없음.¹⁵⁾

■ 한·중 FTA TBT 협정 중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의 MRA 수용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입장이 다소 반영된 내용으로 타결되었음(표 5 참고).

- 양국은 상대국 영역 내에서 실시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수용함에 있어 평가기관간 협력을 장려하고, 상대국 평가결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의무적으로('shall') 보장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음.¹⁶⁾
- 적합성 평가에 대한 MRA의 경우 중국은 중·뉴질랜드 FTA(제97조, 부속서 14)를 제외하고는 인정된 사례가 없음.
- 아울러 양국은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교섭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됨.
- 이에 따라 향후 중국 내 CCC 인증 간소화를 위한 품목별 MRA 체결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공급자적합성선언(이하 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제도¹⁷⁾는 한·중 TBT 협정(제6.6조 제1.(f)항)을 통해 인정될 수 있어 우리 측 입장이 상당 부분 수용되었음.
- 한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SDoC(사후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부분 품목에 대해 사전인증제도¹⁸⁾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업체들이 비대칭적 불편함을 호소하며 중국 내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14) "The Parties may consult on such matters as the technical competence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involved, as appropriate to enhance confidence in the continued reliability of each other's conformity assessment results, before accepting results of a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중·뉴질랜드 TBT 협정문 제67.3조)" 및 중·페루(제98.2조), 중·칠레(제66.3조) 등 참고.

15) 정환우(2012), p. 18.

16) 한·중(제6.6조 3항)에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re prepared, adopted and applied so as to grant access of like product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under conditions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suppliers of like products of national origin."의 강제성을 띠는 'shall'의 표현 채택.

17) 공급자적합성선언은 공급자가 스스로 제품에 대한 시험을 거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정부는 사후에 해당 품목을 임의로 테스트하여 위반을 적발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사후인증제도'로 알려짐.

18) 중국이 채택한 '사전인증제도'란 정부가 제품의 시장출시 전 샘플을 시험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한 후에야 판매가 가능한 방식을 일컫음.

표 5. 한국과 중국의 FTA TBT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 분석

FTA 기체결국	한국	중국
한·중	-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상대국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및 인정 합의, 상대국 적합성 평가기관 자격 부여의 인정절차 채택(may), 양국간 적합성평가 절차 간 자발적 약정 체결 가능, SDoC 수용) - 상기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 촉진을 위해 양국 적합성 평가기관간 긴밀한 업무협력 장려 -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대우 보장(shall) - MRA 협상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고려 - 적합성 평가절차 비용 및 시간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해 협력	
칠레	-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대우 보장 - MRA 협상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고려 -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촉진 - 상대국 영역 내 적합성 평가기관 인가, 승인, 인정에 대한 내국민대우 보장(shall)	-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촉진 메커니즘의 정보 공유 강화 - 상대국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합의 (평가기관 기술능력 관련 사안 사전협의 가능) -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 거부 시 사유 제공 의무
싱가포르	-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해 정보교환 및 양국 적합성 평가기관간 긴밀한 업무협력 장려 - 상대국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자신의 경비로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검증절차에 참여 가능	-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 규제제도 차이 인지, 적합성 평가의 MRA에 대해 논의 수용 - 양국간 적합성 평가절차의 인정 촉진을 위해 시험, 검사, 인정, 인증, 측정을 포함한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상호 교환 - 상호인정협정 또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상대국 영역 내 평가기관에서 실시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에 대한 긍정적 고려 - TBT 협정에 의해 양국간 체결한 적합성 평가절차 상호인정협정 및 합의는 제58조 및 최종 부속서에 명시
페루	-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¹⁹⁾ - 상대국 영역 내 적합성 평가기관 인정 또는 승인함에 있어 내국민대우 보장(may) - 양국간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자발적 약정 체결 가능	- 상대국 영역 내 적합성 평가 기관 인정 또는 승인함에 있어 내국민대우 보장(shall) - 상대국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수용 합의 (평가기관 기술능력 관련사안 사전 협의가능) - 강제 적합성 평가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각 강제 적합성 평가절차의 표준과정기간을 공표하거나 예상처리기간을 상호간 공유하며, 강제 적합성 평가절차가 필요한 특정 산업 제품리스트(영문으로 번역된 6단위 이상 HS코드)를 30일 내 제공
뉴질랜드	- 자국 또는 그 밖에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보장 -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²⁰⁾ - MRA 협상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고려	- 중국 최초로 '전기전자설비에 관한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 체결 -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 거부 시 사유를 제공할 의무 부여
미국	- 자국 시험인증기관 지정 시 상대국에 대한 내국민대우 보장 - 적합성평가 결과의 수용 촉진에 대한 메커니즘 인정 및 범위 관련 정보교환 강화 - APEC TEL MRA 2단계 조속 이행 의무 부과	-

주: 중·뉴질랜드 및 한·미 TBT 조항에 대한 내용은 김동휴 외(2013)에서 일부 발췌.
자료: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라. 공동협력

■ 한국이 맺은 FTA TBT 협정에서는 양자간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의 협력 강화 목적 아래 △ 투명성 확보 △ 우수규제관행(이하 GRP: Good Regulatory Practice)의 증진 △ 국제표준과의 정합 △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 등의 규정이 있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선진 또는 신흥 교역국 체결 협정에 따라 다소 상이함.²¹⁾

-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교역국과의 협정에는 WTO TBT 체제이행을 주목적으로 하며,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정합·투명성 제고 및 평가기관 인정에 대한 조항 등을 포괄하였음.
- 반면 칠레, 페루, 아세안 등 신흥 교역국과의 협정에서는 양국간 제도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기술규정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과 같은 협력을 추구하였음.
-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WTO TBT 협정 이행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 교역국 중심 조항과 기술규정 개발 관련 정보 교환에 중점을 둔 신흥 교역국 위주의 협정 조항이 혼재되어 있음.

■ 중국의 기체결 FTA 내 TBT 협정의 경우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및 우수규제관행의 △ 투명성 확보 △ 국제표준과의 정합 △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중국의 공동협력 관련 조항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상대국 시장에 원활한 접근을 위한 상호간 이해 증진 및 정보 교환 등의 협력 방식을 지향하고 있음.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간 기술조언 및 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둠.
※ 특히 뉴질랜드와의 협정에서는 WTO TBT 체제에 근거한 GRP에 대한 협력 장려

■ 한·중 FTA TBT 협정에서 양국은 각기 기체결한 TBT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협력 범위 및 이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 상대국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국 내 운영·설립 시 협력 △ 신기술관련 규제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 국제공인성적서(IECEE CB) 기반의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등과 같이 기존과 차별화된 조항도 마련함.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및 개발과정에 상대국의 참여를 허용하는 조항은 없으나, 해당 표준 조치 개발에 대해 조언 제공 및 정보 제공 등 기술협력 강화를 촉진하는 조항은 있음.
- 양국은 기존 협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대국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국 내 운영·설립에 대한 조항을 추가

19)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에 대한 조항에는 △ 양국 영역의 인정기관간 협력약정 인정 촉진 △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 각국 소재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 이행 △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 및 지정에 대한 인정 △ 상대국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 수용 합의 및 결과 인정 △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 거부 시 사유 제공 의무 등이 포함.

20) Ibid.

21) 백종현(2014), p. 16.

- 국내 시험기관들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²²⁾ 중국 진출기업 및 국내기업들에 대해 CCC 시험인증 서비스 등을 제 공함으로써 인증시간 및 비용 단축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 전기안전인증을 위한 국제공인성적서(IECEE CB)를 시험결과로 상호간 수용하도록 독려하는 조항을 채택하는 등 대(對)중 수출기업의 시험인증 애로 완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 강구
- 사실상 IECEE CB성적서를 상호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용 시료를 해당국가로 반드시 보내야 함에 따라 처리시간 증가 및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추가로 요구됨.

표 6. 한국과 중국의 FTA TBT '공동협력' 조항 분석

FTA 기체결국	한국	중국
한·중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의 협력 강화(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에 대해 조언 제공, 표준·시험 및 인증 관련 기관들에 대한 협력, 적합성 평가기관 상호 인정, 국제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정·시험·검사 등의 분야 역량 강화, 표준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적용에 관련된 지역·국제기구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 WTO TBT 위원회 및 관련 국제·지역 포럼에서의 소통 강화, TBT 협정 이행 촉진 등) - 상대국 적합성 평가기관이 자국 내 운영 및 설립 시 협력 - 신기술관련 규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교환 - IECEE CB 시험 성적서를 양국 전기제품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결과로 수용 독려	
칠레	- 표준관련 조치, 관련 활동, 진행과정 및 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 정보기술지원 - 특정 관심영역 표준관련 조치와 연계된 자국 기술협력 프로그램 정보 제공 - 표준화 활동에 양국간 협력 - 표준관련 조치 국제협정 또는 프로그램 정보 제공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절차·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 기술조언, 정보지원 제공 - 특정 관심영역 표준관련 조치와 연계된 자국 기술협력 프로그램 정보 제공 - 강제적 및 자발적 인증 관계에 대해 양국간 협력강화 - 시장접근 원활화를 위해 위험분석 고려요소와 관련된 국제표준(ISO 9000, 14000 등)을 고려하러 소통 강화에 대해 연구
싱가포르	- 규제 이슈, 국제표준 조화, 공급자적합선언(SDoC), 적합성 평가기관 능력 검증을 위한 인정체계 활용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정보 교환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또는 적용 관련 상호 기술조언, 기술 협력 등 포함
페루	- 표준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관련 기관 강화 및 인력 양성 - 표준화, 기술규제, 적합성 평가기관간 협력 증진 - 정부·비정부 표준화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간 협력확대를 위한 제안 검토 - 유사한 기술규정 개발 시 관련 정보, 연구 또는 자료 제공 협력	- 시장접근성 상화를 위해 양국간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 협력 - 표준화,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및 계량기관의 역량 강화 - 동 챕터에 요구되는 인적자원 개발 및 양성

22) 대표적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섬유시험연구원(FITI) 등 국내기관들은 중국 상해, 대련, 청도, 심천, 항주, 연대 등에 사무소 또는 시험소 형태로 진출해 있음.

표 6. 계속

FTA 기체결국	한국	중국
페루	- 표준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관련 기관 강화 및 인력 양성 - 표준화, 기술규제, 적합성 평가기관간 협력 증진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 및 개선 - 정부·비정부 표준화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간 협력확대를 위한 제안 검토 - 유사한 기술규정 개발 시 관련 정보, 연구 또는 자료 제공 협력	- 시장접근성 상화를 위해 양국간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 협력 - 표준화,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및 계량기관의 역량 강화 - 동 챕터에 요구되는 인적자원 개발 및 양성
뉴질랜드	- 양 규제기관간 협력 및 시장접근성 강화 등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 협력 - 우수규제관행과 무역촉진 관련 규제사안에 대한 협력 - 투명성, 국제표준 부합화, 기술규정 동등성, 적합성 평가절차 수용촉진 메커니즘 등 무역원활화 계획 확인·개발·체결을 위한 협력 - 작업반은 사안별로 작업프로그램을 설치·조항 이행	- 우수규제관행과 무역촉진 관련 규제사안에 대한 협력 - 해당 조항 이행을 위해 규제제도, 사태분석, 위험 정보, 제품 금지 및 리콜, 제품 감시활동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우수규제관행의 협력
미국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 협력 - 투명성, 우수규제관행 증진, 국제표준 부합화, 적합성 평가기관 자격부여를 위한 인정체계 활용	—

주: 한국과의 FTA 기체결국가(싱가포르, 미국) TBT 조항에 대한 자료는 백종현(2014)에서 발췌.
자료: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4. 향후 전망 및 정책 시사점

■ 한·중 FTA는 2014년 11월 실질타결 선언 이후 3개월 만인 2015년 2월에 가서명되었고, 이어서 6월 1일에 본 서명을 마쳤으며, 양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2015년 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정식 서명이 완료되었으며, 금명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2015년 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²³⁾

※ FTA 협정문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의 절차: ① 가서명(영문) → ② 협정문 번역 → ③ 법제처 심의 → ④ 차관회의 → ⑤ 국무회의 → ⑥ 대통령 재가 → ⑦ 정식 서명(영문, 한글, 중문) → ⑧ 협상 결과 국회 보고 → ⑨ 국회 비준동의 → ⑩ 발효 순으로 진행

■ 한·중 FTA TBT 협정은 15개 핵심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양국의 기체결

23) 산업통상자원부(2015. 2),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참고자료),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doc/1_description.pdf(검색일: 2015. 3. 21).

FTA TBT 협정보다 발전된 용어 사용과 신규 조항 채택 등 당초 예상보다 진일보한 협정으로 볼 수 있음.

- 한·중 FTA TBT 협정에서는 양국의 기존 FTA 협정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소비자제품안전, 마킹 및 라벨링, 국경조치 등에 대한 조항을 채택하여 소비자 안전을 추구하면서도 수출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CCC 라벨 구매 및 등록 절차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자 ‘표시 및 라벨링’ 조항을 신설하여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사전 승인, 등록 또는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영구적 라벨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
-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을 통해 양국간 IECEE CB 성적서 수용을 독려함으로써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인증 요건을 최소화
- ‘국경조치’ 조항은 시험용 시료 통관 역류 사례를 줄여 수출 시간 및 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
- 기체결 FTA TBT 협정문 내 주요 조항에서는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는 ‘may’의 표현을 선정한 반면, 한·중 FTA TBT 협정문 내 주요 조항의 경우 구속력을 지닌 ‘shall’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등 양국간 TBT 협정 이행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또한 양국은 동 TBT 협정을 계기로 일부 산업(품목)에 대한 MRA 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한·중 FTA TBT 협정 내용의 국제표준,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에 비해 다소 미흡함.

- 국제표준 사용에 있어 우리나라는 대체로 WTO TBT 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 추가적으로 ‘비효과적’인 경우도 국제표준 사용 거부 사유로 인정하는 등 양국 영역 내 표준화기관간 협력에 대해 제한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한·중 FTA TBT 협정에 중국 측 의견이 반영되었음.
- 또한 자국 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과정에 상대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비차별적으로 허용하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제·개정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선호하여 이번 한·중 FTA에 반영되는 등 투명성 조항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채택됨.
- 중국의 WTO 통보문 건수가(1995~2014년 누적) 총 1,115건으로 전체 회원국들 중 4위를 기록하는 등 신규 및 개정 기술규정 건수 증가로 주요 교역국 수출입 업계에 기술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한·중 TBT 협정문 중 투명성 조항은 기술규정 제·개정에 대한 상대국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함.
- 그러나 WTO TBT 통보문에 대해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중국 측은 적극적이고 투명한 응답 및 회신으로 ‘투명성’ 조항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킨다는 측면에서 보완장치가 비교적 우수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대(對)중 수출기업의 한·중 FTA 활용 제고를 위해 TBT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

- [품목별·지역별 TBT DB 구축]: 중국 내에서 시행 중인 인증제도 요건 충족을 위해 과다한 시간소요 및 비용 투자가 대중 수출에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성별·권역별로 각기 다른 기술규제정책 및 인증제도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정보습득에 용이하도록 대책 마련

- 한·중 FTA TBT 협정에 양국 내 인증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합치 및 중복인증 방지를 위한 조항이 미비한 관계로 향후 인증제도 불일치 또는 중복 인증 등이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바, 국가적 차원에서 TBT 데이터 구축 필요
 - ※ 우리나라는 중국 내 지방정부에서 신설한 일부 기술규정과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기술규정의 불일치로 인해 해당 지역으로 수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WTO TBT 위원회에 제6차 3년 주기 검토 보고(Triennial Review)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음.²⁴⁾
- [품목별 기업 설문조사를 통한 차별규제 리스트 확보]: 기업설문조사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대(對)중 수출에 있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형성하는 규제 또는 내국인과의 차별규제정책(예: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기술표준 및 법규, 운용현황 등) 등을 조사 및 모니터링
- 한·중 FTA TBT 협정 제6.4조 3항에 의거, 국제표준 채택에 있어 ‘비효과적(ineffective)’인 경우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동 경우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해당 사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TBT 위원회를 통한 양국 협력 도모]: 양국 TBT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규정 또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에 있어 국가기관간 MRA 또는 인증기관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논의를 촉진
- 중국의 경우 중·뉴질랜드 FTA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으나, 이번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측 인증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 기반이 마련된바, 시험성적서 MRA 추진 등 시험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 특히 한국의 대(對)중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용품, 자동차,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CCC 인증절차 간소화를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추진할 필요 **KIEP**

24) 제6차 3년 주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 의견서(G/TBT/W/353, para.9-10) 참고 요망.